

[사 건 명] 행심 2018 - 25

##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5.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취소한다.

### [재결이유]

#### 1. 이 사건 경위

- ① 피해학생이 2018. 4. 13. ‘반 단체 대화방(○○○○ ○○○○)’에서 지구과학 시험범위를 물어보았고, 이에 청구인은 대화방에 ‘인간의 권리’, ‘발언권’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은 ‘피해학생이 수업시간에 잘 들었으면 알았을 텐데 자서 모르는 것 아니냐’는 표현을 ‘시발’이라는 문자와 함께 게시하였다.
- ②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단체대화방에 표시한 청구인의 표현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sup>1)</sup>, 청구인에 대하여 피해학생과의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

---

1) 청구인에 대한 조치결과 통지서의 조치원인은 ‘4월 18일과 5월 1일 접수된 사안으로서 현재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황등을 고려하였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를 고려하여 조치를 내린다’고 되어 있으나, 행정심판 심문과정에서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에 대한 조치원인은 ‘단체대화방에서 언어폭력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조치원인을 단체대화방에서의 언어폭력으로 한정하여 판단한다.

지, 청구인 및 학부모에 대하여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의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고, 피 청구인은 2018. 5. 11. 청구인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청구인의 주장

- ① 청구인이 단체대화방에 제시한 내용은 언어표현의 방법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치를 한 것은 대학진학을 앞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 나. 피청구인의 주장

- ① 학교폭력 신고 접수부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에 의거하여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본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② 단체대화방 대화문을 검토한 결과 대화문에는 신조어, 줄임말, 급식체 등 청소년들의 언어 및 비속어 등 평상시의 대화를 엿볼 수 있으며 학교폭력의 기준은 학생의 피해여부라고 볼 수 있다.
- ③ 청구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고 요소 중 하나로 작용되며,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조치를 내린다.
- ④ 피해학생은 1학년 시기부터 지속적인 장난 등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허탈감, 무력감, 또래관계 부적응 등의 우려와 두려움으로 등교를 꺼리고 있으며, 학교 이야기만 들어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 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대화내용이 명예훼손·모욕 또는 따돌림·사이버 따돌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나. 단체대화방의 내용

피해학생 : 지과 시험범위 아시는 분? (10:42)  
●●● : 배운곳까지 일걸? 설마 안배운게 시험에 나오겠어? (10:51)  
피해학생 : 단원으로 (10:53)  
○○○ : 아마 광합성까지일걸 (10:53)  
피해학생 : 지과랏잖아 (10:54)  
○○○ : 어찌라고. 나는 생명2듣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10:56)  
피해학생 : 잘못된 대답을 하지 말아야지 (10:57)  
○○○ : 사람은 모두 실수를 해 (10:59)  
사진(자고 있는 모습)  
○○○ : 지구과학실에서 자니까 범위를 모르는거지!(11:00)  
피해학생 : 안말해줄거면 말하지마(11:06)  
◇◇◇ : 인간의 권리,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공적인 권리, 발언권  
□□□ : 사진(체육복을 입은 학생이 서있는 모습) (11:07)  
피해학생 : 꺼져다들 (11:07)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07)

피해학생 : 진짜 □같다 (11:07)

◇◇◇ :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ㄷㄷ이 침투력 무엇 (11:08)

□□□□ : 욕하는건 아닌거같은데 (11:08)

⓪⓪⓪ : ■■ 나도 우리반의 일원인데 말을 할 권리가 있잖아 ... (11:13)

⓪⓪⓪ : 하. 우리들의 3년 우정이 이렇게 깨지는 구나  
■■는 왜 시험범위를 모르는 것일까 (11:20)

◇◇◇ : 아... 원통하다 (11:21)

⓪⓪⓪ : 과연 지학쌤은 범위를 안알려주셨던 것일까? (11:22)

피해학생 : 비꼬지 말고 (11:23)

⓪⓪⓪ : 설마 시~벌 수업시간에 자서 놓치진않았을테고.. (11:23)

피해학생 : 안알려줄거면 (11:23)

◇◇◇ : 시발 ■■ 좀 (11:23)

피해학생 : 뭐 (11:23)

◇◇◇ : 지학쌤한테 괜톡으로 물어보던가. 왜 여기서 난리야 (11:23)

□□□□ : 비분강개 (11:23)

⓪⓪⓪ : ◇◇ 아무리 그래도 친구한테 욕은 좀 ...

◇◇◇ : ■■ 내가 욕한거 아니야. ●●이가 내꼴로 장난친거야ㄱㄱ (11:25)

ㄷㄷㄷ : ⓪⓪⓪과 ◇◇◇ 조용히 안해 (11:28)

⓪⓪⓪ : 네 형 (11:28)

⓪⓪⓪ : ■■ ㅈㅈ 아마 별의 물리량까지 일걸  
메가스터디에서 잘 가르쳐주니까 참고행 (11:31)

◇◇◇ : 창문 조심하기 (11:33)

⓪⓪⓪ : (사진) (11:33)

◀◀◀ : 머꼬 (11:34)

◀◀◀ : 어딴였누 (11:35)

피해학생 : ⓪⓪⓪ 죽여버린다 (11:35)

□□□□ : 왜 그래 (11:36)

⓪⓪⓪ : 하 슬슬 갈때가 된건가  
■■ 잠만 가기전에 읍치 다이아만 찍고 (11:37)

단체대화방의 내용은 피해학생이 단체대화방에 지구과학 시험범위를 묻자, 같은 반 친구들이 피해학생에게 다른 과목에 대하여 말하거나, 피해학생이 지구과학 시간에 잠을 잤기 때문에 시험범위를 모르는 것이라고 하며, 지구과학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등 전반적으로 피해학생을 놀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처럼 단체대화방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놀리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를 곧바로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청구인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글은 위의 밑줄친 것으로, 피해학생이 ‘말해주지 않으려면 말하지마’라고 하므로 인간에게는 발언권이 있다고 비꼬거나, ○○○이 ‘왜 시험범위를 모르는 것일까’라고 하므로 그 상황이 ‘원통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청구인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대화내용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장난삼아 놀리는 행위를 하였고, 단체대화방의 내용은 이러한 행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구인의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려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sup>2)</sup>만으로는 청구인을 포함한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으로 공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평소 장난삼아 조롱하거나 놀렸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상황이 추측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하기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치는 위법하다 할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주어진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요구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격한 증명의 절차를 거쳐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그러한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 또는 가능성, 추측만으로 함부로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청구인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거나 자퇴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중대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하지만 위 진술서의 내용은 청구인 등이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 또는 정당화한 것이거나, 학생들이 피해학생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학생 및 그 학부모의 진술서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것이다.

####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조치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